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5. 12.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개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1.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규제의 재검토) <u>보건복지 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 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21조(규제의 재검토) <u><삭 제></u>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2020년 1월 1일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45조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1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제37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용도: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에 따른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7. 제38조제5항 및 별표 17에	<삭 제>

<u>따른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u> <u>준: 2014년 1월 1일 따른 구급</u> <u>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u> <u>·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u> <u>기준: 2014년 1월 1일</u>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u> <u>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u> <u>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u> <u>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u> <u>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u> <u>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u> <u>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u> <u>급여 관리사의 자격: 2023년</u> <u>1월 1일</u> <u>2. 제17조에 따른 제3차의료급</u> <u>여기관의 지정 등: 2023년 1</u> <u>월 1일</u>	<u><삭 제></u>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u> <u>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u> <u>방 교육에 대하여 2023년 1월 1</u> <u>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u> <u>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u> <u>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u> <u>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삭 제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 3. 삭 제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15조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4.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5. 제21조 및 별표 11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